

2024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 공고

국내 제조공장을 소유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01. 22.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1. 사업목적

- 오염물질 배출 비중이 높은 제조공장을 소유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오염물질 저감, 에너지·자원 효율 제고 등을 고려한 친환경 공장 전환·구축 지원

2. 지원대상 및 규모

- (지원대상) 국내 제조공장을 소유한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에 필요한 컨설팅, 온실가스 저감 및 환경관리설비 개선·설치 비용 지원
- (지원분야) ①온실가스 저감, ②ICT, ③대기오염 저감, ④수질오염 저감, ⑤폐기물배출 저감, ⑥자원순환, ⑦환경보건, ⑧기타 시설
 - ※ 사업취지에 맞게 다양한 분야의 설비 융합 추진 필요(지원분야 ①~⑧ 중 ①, ②를 반드시 포함하여 3개 분야 이상 선택하여 신청)
 - ※ 시설 1개당 지원분야 1개만 적용 가능(그 외 분야에서의 효과가 있을 경우 부가효과로 제시)
- (지원기간) 협약일~2024.11.30.
- (지원규모) 기업당 최대 10억원 이내(90개사 내외 선정)
 - ※ 지원금 및 예산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과제별 총사업비 구성 >

신청기업 유형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중소기업	60% 이하	40% 이상
중견기업	50% 이하	50% 이상

* 민간부담금은 전액 현금으로 구성되며 현물은 인정하지 않음

3. 추진절차

절차	한국환경공단	신청기업
사업 공고 및 신청·접수(~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신청서 제출
↓		
지원과제 선정(3~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검토 서면 및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현장확인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류보완(필요시 10일 이내) 최종선정평가 참석(수행책임자에 의한 발표) 현장확인 응대
↓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약체결 보조금 선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종 서류보완 협약체결 서류 제출
↓		
진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간보고서 검토 진도관리 및 잔금 지급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간보고서 제출(익월 10일 기한) 진도관리 수검
↓		
사업완료 (~'24년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행상황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운전 및 사업성과 증빙자료 준비 사업결과보고서 작성
↓		
보고서 제출 (~'24년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결과보고서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		
결과평가 및 정산 (~'25년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과평가 개최 사업비 정산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과평가 참석(수행책임자에 의한 발표) 사업비 정산금 반납
↓		
사후관리 ('25년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효과보고서 관리 및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효과보고서 제출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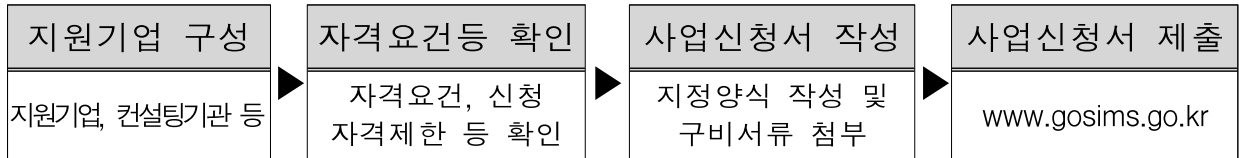
4. 공고 및 접수 일정

○ (공고 및 접수기간) 2024.1.22.(월) ~ 2.28.(수) 18:00까지

※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을 시 접수 불인정

5. 신청방법

-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에서 사업안내서 열람
 - ※ 공단 누리집 공지사항 ‘2024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참조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www.gosims.go.kr)에 사업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제출서류(사업계획서 제5장 참고)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식(한글, Excel)
 - 별첨서류(별첨1~4)
 - 구비서류
 - ※ 서류제출 시 e나라도움 사업 공고문에서 제공하는 입축파일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
 - ※ 신청서류 제출 시 공고문의 첨부파일을 사용하여야 하며 양식의 임의변경 시 탈락처리
- e나라도움(www.gosims.go.kr) 사업신청 절차

- ① e나라도움 회원가입 후 [로그인] ⇨ ② [사업수행관리] ⇨
- ③ [신청관리] ⇨ ④ [사업신청관리] ⇨ ⑤ 공모현황 ⇨
- ⑥ 공모명 선택(2024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후 [신청서 작성] 클릭 ⇨ e나라도움에
작성 및 첨부서류(사업신청서 등) 파일 첨부 ⇨ [신청서제출] 클릭

※ 시스템 가입 및 사업신청 방법은 e나라도움 사용자 매뉴얼의 해당 항목 참조 :

<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anualList.do>

6. 공통 유의사항

- (견적서 제출) 비목 중 유형자산 및 건설비에 대해 계약건수별 본 견적서 1개, 비교견적서 2개 이상을 제출하되, 비교견적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와 함께 증빙서류(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제출

-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협약 체결 시, 협약기간에 가산기간(3개월)을 포함한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요(보험료 기업 자부담)
- (원가계산서 제출) 협약 체결 시, 원가계산전문기관에서 발급받은 원가계산서 제출 필요(소요 비용 기업 자부담)
- (사전 계약체결 불가) 지원대상 선정 이전에 설비제조업체(또는 시공업체)와의 계약 체결 시 해당 신청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지원대상 선정 이후, 사전 계약체결이 확인될 경우 관련 보조금 취소
- (계약 체결 규정 준수) 「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22조 및 제23조를 준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사후관리) 사업종료 후 3년간 사업효과보고서를 매년 제출하여야 함
- (설비 처분제한) 사업 종료 후 5년 이내에 성과물을 양도,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35조를 준용하여 적용